

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항** : ① 책임운용인력 변경 (한규민 → 현해정)

②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2. 10. 7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 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2. 9. 2.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8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2. 9. 2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<u>2021. 8. 31. 기준</u>	<u>현해정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<u>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</u>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시30분 이전(경과후)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	15시30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시30분 이전(경과후)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제 4(4)영업일</u> 에 지급	15시30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(4)영업일</u> 에 지급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<u>2021. 8. 31. 기준</u>	<u>현혜정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<u>2021. 8. 31. 기준</u>	<u>현혜정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책임운용인력 변경	<u>한규민</u> (<u>운용기간 : 2020.04.14~</u> <u>현재</u>) 〈신 설〉	<u>한규민</u> (<u>운용기간 : 2020.04.14~</u> <u>2022.10.06</u>) <u>현혜정</u> (<u>운용기간 : 2022.10.07~</u> <u>현재</u>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<u>〈삭 제〉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</u>

		① ~ ⑤ (생략)	<u>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 3), 4), 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~⑤ (생략) (나) (생략)	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 3), 4), 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~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<신 설>	<u>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<u>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</u>

			<u>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 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	제 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표준편차 : 21.67%</u>	<u>표준편차 : 21.36%</u>

적합한 투자자 유형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 준가격 ①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 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 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(생략)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①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 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 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 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(현행과 같음)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시 30분[오후 3시 30 분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 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기업공시서식	- <u>2021. 7. 31. 기준</u> 주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	<u>2022. 9. 2. 기준</u> <u>2022. 8. 31. 기준</u> 주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

	작성기준 반영	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신 설>	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4,054,894원입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9.03~2022.09.02]</u>
		<신 설>	<u>1</u>
		<신 설>	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 · 채권 · 수익증권 · 파생상품 · 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
			<u>주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: 2021.09.03 ~ 2022.09.02]</u>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2.9.2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2.9.2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2.9.2.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8. 31. 기준</u>	<u>2022. 8. 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3기(2020.12.31)</u> <u>제24기(2021.12.31)</u>	<u>제24기(2021.12.31)</u> <u>제23기(2020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8. 31. 기준</u>	<u>2022. 8. 31 기준</u>



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		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사명 변경	<u>KIS 채권평가주식회사</u>	<u>KIS 자산평가주식회사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

		(2) ~ (3) (생략)	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략)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